



# 학생 자전거 이용 안내 및 동의서

전주북초등학교  
제 2021-50호  
2021.4.1.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180 • 교무실 241-5949 • FAX 241-5950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우리 어린이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최근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이 늘어나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학교는 등·하교시와 하교 후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교 후 자전거와 킥보드를 과속으로 타는 학생들로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부모님의 협조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득이하게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는 뒷면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전거 5대 안전수칙

- 음주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행 금지
- 안전모 착용**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
- 안전장치 장착**  
야간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조등, 반사장치 등을 장착
- 안전속도 지키기**  
안전을 위하여 권장 속도(20km/h) 준수
- 휴대전화·이어폰 사용금지**  
휴대전화 및 이어폰, DMB 등 디지털기기의 사용 금지



##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 13+**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어도 운행 가능  
단,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의 운행 금지
- 중요** 전기자전거 안전하게 사용하자!
  - 주행 전 사용설명서를 읽고, 단계별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
  - 정지한 상태에서는 전동기가 조작되지 않도록 브레이크 잡기
  - 급제동 사고 예방을 위해 정지 시 뒷브레이크(우측레버) 먼저 사용
  - 우천 시에는 전기장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행 자제

## 개인형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불가

- 금지** 배기량 50cc 미만의 스포츠방식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은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면허를 취득하고 차도를 통행해야 함
- 금지** 개인형이동장치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3만원 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2021. 4. 1.  
전주북초등학교장

